

입 법 예 고

농 업 · 농 촌 공 익 기 능 증 진
직 접 지 불 제 도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촌소득정책과)

1. 개정이유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짐에 따라 지급요건이 엄격해져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모법 개정·공포(‘26.5.1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

2. 주요내용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경우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시 종전의 행정구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등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구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의 주업 판단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 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 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등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

(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

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

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

· 군· 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

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
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
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등
(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
지등을 포함한다)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
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
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
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
·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
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
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
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신 설>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등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구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815, 2816